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①항과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제43조(임용) 제①항에 따라 학교법인 정의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설치, 경영하는 서울여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법인 이사회가 학교의 총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결정한 학교의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후보 입후보자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총장후보자 공모에 응하여 학교법인 사무국에 지원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총장후보자’라 함은 총장후보 입후보자 중에서 총추위가 이사회에 최종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3. ‘현 총장’이라 함은 현재 재직 중인 총장을 말한다.

제2장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제4조(총추위 구성)

- ① 총추위는 18인으로 하는 바, 이사 2인과 교수 8인(교수회 추천 단과대학별 각 1인으로 6인, 대학평의원회 추천 2인), 직원대표 3인, 학생대표 2인(대학, 대학원), 학외동문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총추위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원 주체에서 즉시 충원한다.
- ② 총추위 위원장은 이사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총추위 회의소집 및 진행, 총추위 업무를 총괄한다. 총추위 위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서기와 간사는 법인국장이 담당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추위 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장후보 입후보자로 등록 및 등록 예정인 자
 2. 총장후보 입후보자로 등록 및 등록 예정인 자의 배우자

3.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5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 추천인
- ⑤ 총추위는 총장임기 만료 120일 전까지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총추위 기능)

1. 총장후보자 선정 절차 및 일정 등을 논의한다.
2. 총장후보 입후보자의 서류, 범죄사실 조회, 징계사항 등을 검증하여 자격을 심사한다.
3. 총장후보 입후보자의 지원자격, 소견발표 및 발전계획 등을 종합하여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 ① 총추위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일반적인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후보 입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총장후보자 결정시에는 추천위원 1인 1표로 하고 종다수로 의결한다. 단, 2인의 총장후보자를 정할 때 2위가 복수일 경우 그들 모두 총장후보자로 선임하고, 3인의 총장후보자를 선임할 경우 3위가 복수일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따른다.

제3장 총장후보 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7조(총장후보 입후보자 자격)

- ① 총장후보 입후보자는 학교의 건학이념에 투철하고 학문적 소양과 행정·재정의 경영능력을 갖춘 리더십이 탁월한 헌신된 교회직분자로서 총장 임기 시작 기준 전임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된 사람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후보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2.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감봉 이상 징계 그에 준하는 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

- ① 총장후보 입후보자의 등록은 학교법인 사무국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총장 초빙지원서(소정양식)
 2. 직무수행 및 대학발전계획안(A4 용지 5~10매)
 3. 소견서 및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 이내)

4. 출석교인확인서(소정양식)
 5. 주민등록등본
 6.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7. 총장후보 추천서(소정양식)
 8. 연구윤리준수 서약서(소정양식)
 9.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소정양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추천인)(소정양식)
 11.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이용동의(소정양식)
- ② 총장후보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교무위원인 경우 후보 등록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현직 총장이 총장후보 입후보자일 경우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 ③ 총추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각 입후보자가 제출한 소정의 서류를 확인 후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장후보자 선출

제9조(총장후보 입후보자 추천)

- ① 교내 교원의 경우 교원 15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외인사는 학교 교원 8인, 교계인사 및 사회유지 7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교원 추천의 경우 동일 학과(부)에 2인 이하, 동일 단과대학에 4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총장후보자 추천)

- ① 총추위는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총장후보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제6조에 따라 2~3인의 후보자를 가나다순으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단, 동순위가 발생할 경우 초과할 수 있다.
- ③ 총추위는 총장후보자 선출 및 학교법인 이사회에 추천한 결과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1조(부당행위 금지)

총장후보 입후보자가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총추위 위원 및 이사를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 등의 불법 선거운동, 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한 경우 총추위는 총장후보 입후보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추천시한)

- ① 총추위는 이사회에 차기 총장후보자의 추천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90일 전까지 만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 결원이 있을 시 예외로 한다.

- ② 단, 총추위가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총장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이 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총추위 위원 준수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총장후보 입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2. 편견이나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각 총추위 위원 간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배척하도록 종용하지 않는다.
4.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총추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위원이 준수사항 위반 시 총추위 위원에서 제외된다.

제14조(학교구성원 및 동문 준수사항)

1. 공개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배척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학교 구성원을 선동하거나 집단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3. 총장후보 입후보자의 지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총추위에 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각 구성원들은 총추위 구성원 대표위원에게 각 구성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법인 이사 준수사항)

1.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 회의석상 이외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배척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학교 구성원을 선동하거나 집단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4. 편견이나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해산)

총추위는 구성일로부터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 후 해산하며, 관련 자료 일체는 학교법인으로 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53차 이사회 승인

2024. 8. 27